

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88,564,847	8,656,945
일반회계	247,331,340	7,419,940
특별회계	41,233,507	1,237,005
공기업특별회계	17,440,389	523,21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440,389	523,212
기타특별회계	23,793,118	713,794
주택사업특별회계	37,898	1,137
기반시설특별회계	10,223	30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02,000	15,060
의료보호특별회계	654,831	19,645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756,250	52,688
장학사업특별회계	6,471,822	194,15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013,349	60,400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49,628	25,489
수질개선특별회계	11,497,117	344,91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해 당 없 음"

제 4 조 [명시이월사업] "해 당 없 음"

제 5 조 사고이월 사업은 별첨 "사고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7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44,888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7,419,940천원으로 한다.

제 9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위 비목 상호 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다른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